## 공 시 송 달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176의 개간허가 승인기간이 만료되었고 소유권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농어촌정 비법」제116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24. 10. 21. ~ 11. 8. (18일간)
- 2. 공고내용: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176 개간사업 중지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3.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116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4. 의견제출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말목장터로 539, 최 \* 주
- 5. 처분내용 : 내촌면 와야리 산176 개간사업 중지
-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2024. 11. 8.(금)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전화, 팩스(☎033-430-2679) 등
  - 다. 제 출 처: 홍천군청 농정과(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층)
- 7. 유의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 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 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8. 문 의 처: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농정과 농업기반팀 (☎033-430-2697)

2024. 10. 21.

## 홍 천 군 수

# 처분 사전통지 내용 및 대상자 현황

	대상자	· 처분원인	처분	반송사유	
이 름	주소	시도권인	내용		
최 * 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말목장터로 539	개간허가 승인기간 만료, 대상지 소유권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176 개간사업 중지	수취인 불명	

####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	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 화번	호:				)
	의 견			(					
	기 타								
「행정절차 출합니다.	·법」 제27조제1	항, 제31조제3항	및 제40	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u> </u> 제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